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
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기 관 명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|
| 연 월 일 | 2025. 2. .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469호, 2024. 10. 22 공포, 2025. 4. 23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대상에서 공립과학관을 삭제  
(안 제7조, 별표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     의 : 관계부처 협의 (25. 2. 26. ~ 25. 3. 11.)

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##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”을 “국립과학관”으로 한다.

별표의 제목 중 “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(제7조 관련)”을 “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(제7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의 비고 중 “정하고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<u>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</u> 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 | 제7조(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) -----<br>----- <u>국립과학관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|

## [현행 별표]

■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]

###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(제7조 관련)

#### 1. 관람료

| 구분    | 금액  |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| 개인  | 단체<br>(30명 이상) |           |
| 어른    | 4천원 | 3천원            | 20세 ~ 64세 |
| 청소년  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13세 ~ 19세 |
| 어린이  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7세 ~ 12세  |
| 노인   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65세 이상    |
| 장애인  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          |
| 국가유공자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          |

#### 2. 과학기술자료 이용료

| 구분          | 수량 | 금액  |
|-------------|----|-----|
| 사진 및 비디오 촬영 | 1회 | 2만원 |
| 사진 원판 이용    | 1장 | 2천원 |

비고: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하고,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[개정안 별표]

■ 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]

### **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**(제7조 관련)

#### 1. 관람료

| 구분    | 금액  |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| 개인  | 단체<br>(30명 이상) |           |
| 어른    | 4천원 | 3천원            | 20세 ~ 64세 |
| 청소년  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13세 ~ 19세 |
| 어린이  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7세 ~ 12세  |
| 노인   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65세 이상    |
| 장애인  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          |
| 국가유공자 | 2천원 | 1천5백원          |           |

#### 2. 과학기술자료 이용료

| 구분          | 수량 | 금액  |
|-------------|----|-----|
| 사진 및 비디오 촬영 | 1회 | 2만원 |
| 사진 원판 이용    | 1장 | 2천원 |

비고: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한다.